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1. 20 선고 2021가단2408(본소), 2021가단2699(반소) 판결  
[물품대금 ·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1. 20.

## 주 문

1. 피고 C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2,20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1.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C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E이라는 상호로 레미콘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포항 F 연립주택 신축공사(건축주: 피고 회사)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12.경 원고가 납품한 레미콘 대금을 건축주인 피고 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9. 6. 3.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2019. 6.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미지급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6. 28. 7천만 원, 같은 해 11. 15.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현재 레미콘 대금 미납액은 52,207,910원(=322,207,910원 + 추가공급물량 10,000,000원 - 기지급액 28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미납액 52,207,9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 파산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직불합의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사이의 직불합의를 취소하고, 1차 합의 이후의

합의들은 피고들이 1차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른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 것으로 착오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취소하며,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은 직불합의 취소를 원인으로 원고가 부당이득한 돈 중 1억 원의 반환을 반소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7371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착오 주장도 단순한 동기의 착오로서 상대방인 원고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따라서 피고들의 항변 및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07,91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철